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 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관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을 조례에 위임〉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2201045호)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 명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을 조례에 위임(안 제10조)	2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부

나. 제출연월일 : 2024. 6. 27.

다. 회부연월일 : 2024. 6.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국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을 조례에 위임(안 제10조)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국립과학관등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생략) ② <u>국립과학관 및 국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되, 국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 국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법제처에서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거나 국가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의된 것임.¹⁾

현행 제10조제2항²⁾은 국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그 밖에 과학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의 금액 산정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국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등의 이용료를 별도의 제한 없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1. 관람료

구분	금액		비고
	개인	단체 (30명 이상)	
어른	4천원	3천원	20세 ~ 64세
청소년	2천원	1천5백원	13세 ~ 19세
어린이	2천원	1천5백원	7세 ~ 12세
노인	2천원	1천5백원	65세 이상
장애인	2천원	1천5백원	
국가유공자	2천원	1천5백원	

1)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81개 법률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2024년 7월 8일 기준)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과학관은 관람료와 그 밖에 과학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되, 국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과학기술자료 이용료

구분	수량	금액
사진 및 비디오 촬영	1회	2만원
사진 원판 이용	1장	2천원

자료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관람료 등은 공립과학관의 자체 수입에 포함되어 해당 과학관의 운영경비에 활용되고 있는데, 공립과학관의 운영경비가 부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충당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수준의 관람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공립과학관은 그 형태가 과학관, 천문대, 생태관, 아쿠아리움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관람료나 이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따른 일괄적인 기준을 두는 것 보다 각 공립과학관의 운영상황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참고로, 공립박물관이나 공립미술관의 경우도 관람료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³⁾

문 의 처

02)6788-5227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①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